

# 연구활동 결과보고서

「성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.

연구단체명		성북구 조례연구회	
연구내용	연구주제	○ 우리구 조례에 대하여 전수 조사 후, 상위법 등 인용조항이 변경되었음에도 미개정 상태로 남아 있는 자치법규를 현행 법령에 맞게 변경하고, 「정부조직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「민법」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. ○ 법제처의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’에 따른 조문 수정 ○ 상위법령의 개정 등으로 존치 이유가 없는 조례 폐지 등	
	연구목적	현실에 맞지 않거나 주민생활과 직결된 우리구 조례에 대하여 조사 연구 검토를 통해 조례를 발굴 개정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화 시대의 행정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함	
	연구결과	(별첨)	
연구활동비	수령액	금이백오십만원 (₩2500,000)	
	집행액	금이백사십삼만육천육백육십원 (₩2,436,660)	
	잔액	금육만삼천삼백사십원 (₩ 63,340)	
	집행내역	자료수집 및 여비	금 오십만원 (₩500,000)
		회의 및 세미나비	금 일십삼만육천육백육십원 (₩136,660)
		전문가 활동경비	금 원 (₩ )
기타		금일백팔십만원 (₩ 1800,000)	
특기사항	“집행관련 증빙자료 일체”		

- 붙임 1. 연구활동 결과물 1부  
 2. 연구활동비 세부사용내역서 1부  
 3. 기타 필요한 사항

2015년 11월 일

신청인 대표 : 윤만환 (인)

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장 귀하